

외국인숙소 사용 규정(3-4-8)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외국인 숙소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자격) 외국인 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본교에서 초빙한 외국인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해외 초빙교원으로서 한국에 6개월 이상 체재하는 자
2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 3 조(임무) 외국인 숙소에 입주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인의식을 갖는다.
2. 학교의 허가없이 용도 및 내부구조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.
3. 시설 및 비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4. 외국인 숙소의 보수는 공간디자인실의 허락을 득하여야 하며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.

제 4 조(관리부서) 외국인숙소의 보수를 제외한 전반적인 관리는 외국인숙소 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.

제 2 장 입주 및 퇴거

제 5 조(입주신청) 외국인 숙소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계약시작일 10일전까지 외국인숙소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 입주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.

제 6 조(입주허가) 입주 외국인교원은 총무처장의 승인에 의하여 입주 허가를 득할 수 있다. 입주 허가를 받은 자는 개강 5일전부터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후 입주할 수 있다.

제 7 조(구비서류) 입주가 허가된 외국인교원은 입주시 각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외국인숙소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8 조(보증금) ① 입주가 허가된 외국인교원은 소정의 보증금을 외국인숙소 담당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퇴거시에는 미납된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고, 외국인숙소의 열쇠를 외국인숙소 담당부서에 반납한 후 적립된 보증금을 수령한다.

제 9 조(입주기간) 입주기간은 6개월과 1년을 단위로 설정하며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. 단, 6개월 미만 입주자의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입주할 수 있다.

제 10 조(퇴거)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.

1. 본교에서 퇴직 및 계약체결기간이 만료되었을 때(계약만료일전 15일 이내)

2. 입주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퇴거통고를 받았을 때(통고일로부터 15일이내)

② 퇴거기한 미준수시 퇴거기한일로부터 1일 별도의 과금을 부과한다.

1. 1항 1에 의한 만료일까지도 미퇴거시 강제퇴거 할 수 있다.

2. 1항 2에 의한 통고일 30일 이후까지도 미퇴거시 강제퇴거 할 수 있다.

③ 입주자의 계약 및 입주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외국인숙소 담당부서에 통보 하여야 한다.

제 11 조(관리원칙) 외국인교원 숙소의 사용 관리는 입주자가 한다.

제 12 조(손상보고) 숙소 건물 및 기타 시설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외국인숙소 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3 조(손상복구)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의 파손, 기타 시설물을 손상 및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을 외국인숙소 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4 조(공과금 부담) ①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공과금 내역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
1. 전기요금

2. 수도요금

3. 전화요금

4. 아파트 관리비

5. 가스요금

6. 외국인숙소 관리실 및 외국인숙소 담당부서에서 정하는 요금

②관리비는 입주한 날로부터 퇴거일까지 입주자가 청구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15 조(비품지급) 외국인교수 숙소의 비품기준은 별지 제3호의 기준에 준한다.

제 16 조(보수) ① 건물 및 시설물의 원형유지 보존을 위한 보수는 본교에서 부담한다.

② 시설물 보수 및 교체 : 숙소기준 도배(1회/4년), 장판(1회/4년)

단, 주거에 의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주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.

1. 거주자 개인의 편의에 의한 보수

2. 욕실 및 하수구 수선

3. 집기비품 수리

4. 기타 본교에서 지시한 사항

제 17 조(임대계약)

① 교외 외국인숙소는 근무지로부터 10Km이내의 거리에 위치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외국인숙소 임대 계약의 면적은 84제곱미터(25평형) 이하로 할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1)

외국인숙소 입주신청서

본 적(국적) : _____
현 주 소 : _____
성 명 : _____
생 년 월 일 : _____년 _____월 _____일
직 위 및 직 책 : _____

입 주 자 인 적 사 항

세대주와의 관계	성명	생년월일	직업	비고

외국인숙소의 입주를 원하오니 위의 사항을 참조하시고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입주자 성 명 : _____ (인 또는 서명)

대리인 소 속 : _____

성 명 : _____ (인 또는 서명)

건 양 대 학 교 총 무 처 장 귀하

(별지 2)

각 서

본인은 금번 건양대학교 교원으로 임용(또는 임용예정) 통보를 받고 아래와 같이 숙소에 입주함에 있어 제반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, 학교 당국의 요청 및 지시에 따를 것을 약속하고, 숙소 입주 기간을 ____년으로 할 것을 서약하오며,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.

- 아 래 -

1. 숙소소재주소 :
2. 숙소의 구분 : 아 파 트 (평수 평)
원 룸 (평수 평)
현암학사 (호실: 호)
3. 사 용 기 간 : 년 월 일 부터
 년 월 일 까지

년 월 일

입 주 자
현 주 소 :
소 속 :
직 위 :
성 명 : (인)

건 양 대 학 교 총 무 처 장 귀하

(별지 3)

외국인교수 숙소 비품지급 기준

품명	수량	비고	품명	수량	비고
옷 장	1		식 탁	1	
냉 장 고	1		식 탁 의 자	4	
가스레인지	1		침 대	1	
세 탁 기	1	교내 인성관 제외			
응 접 셋 트	1				